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1272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2. 6. 21.

판결 선고2022. 10. 18.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4.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243,1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243,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은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2014. 9. 29.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년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2015. 1. 29.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0,590,303원 및 그 중 5,658,703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2014차50231),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D은 부친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9. 10. 4.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G, 다른 자녀인 피고, H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고, G, 피고, D, H(이하 'G 등'이라 한다)의 상속지분은 G가 3/9이고, 피고, D, H이 각 2/9이다.

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은 2020. 4. 1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상속지분인 2/9 지분을 포기하고 위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인 2020. 4. 18. G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J 상속인 B (주민등록번호 1) 대전광역시 유성구 1 에게 F 부동산 1. 2. 3 명의이전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향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 전에 방부 F 의 배우자 G (주민등록번호 2) 의 노후와 방간호 및 생활에 주도적인 도움과 아울러 채무를 다할 것을 확인하고 위 1. 2. 3항목 부동산의 근저당 및 근저당 설정해제 금을 포함한 30,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H 과자라 15,000,000원 상환을 약정하고 망부 F 의 체납된 공과금도 B (주민등록번호 1) 이 변제하기로 한다.

만일,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부 F 의 배우자 G 의 대한 채무를 만할시에는 상속인 B 은 위 부동산 1, 2, 3월 G 로 다시 명의이전 하기로 하고 위 상속인 B 은 이의 없음을 아울러 확인한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00만 원, 채무자를 망인,

근저당권자를 K조합으로 한 1994. 3. 31.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위 분할협의 후인 2020. 4. 28. 피고와 H이 그 협의 내용에 따라 각 약 1,500만원씩 부담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해지 및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 등이 '장녀인 피고가 망인의 배우자인 G를 부양하되, 피고와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나누어 변제하고, 망인의 체납 공과금 등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한 합의에 따라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도 망인이나 G의 병원비 및 생활비, 망인의 장례비, 망인의 체납 공과금 등을 피고가 주도적으로 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툼다.

2)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다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피고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D의 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분을 산정할 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자녀로서 망인에 대한 일반적인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를 넘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D이 남매 사이로서 피고는 D의 경제 상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주장 자체로도 D은 망인이나 G의 병원비 및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에도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D의 채무초과 상태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1)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 후에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여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가액배상으로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채권자의 위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4) 원고의 손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는 아래와 같은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더 적은 금액인 8,243,110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 피보전채권액(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6. 15.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갑 제4호증):

21,575,922원

나)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37,093,998원[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67,692,040원(갑 제6호증) - 피담보채무액 29,978,592원(을 제7호증) - 금산군 압류 체납액

619,450원(이 법원의 금산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D 지분(2/9) = 8,243,110원(원 미만 버림)

마. 소결

이 사건 분할협의를 손해행위로서 위 8,243,1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손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8,243,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김종신

별지